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에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민선4대 주요 시정 과제의 하나인 「Well-being시정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지대 저소득층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
- 시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등 간선시설이 없는 감천2동 고지대지역에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므로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

## 3. 취득대상 재산현황

연번	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 (㎡)	지목 (구조)	시설 내용	소요예산 (천원)
총계	2			토지:461 건물:737		건물 15개동	423,500
1	쌈지공원 조성 (제1지구)	소계		678			241,600
		토지	감천동 6-1165의 6필지	251	대지		114,500
		건물	감천동 6-1165의 8개동	427	블록, 스레트외	건물 8개동	127,100
2	쌈지공원 조성 (제2지구)	소계		520			181,900
		토지	감천동 6-1774의 1필지	210	대지		95,500
		건물	감천동 6-1774의 7개동	310	블록, 스레트외	건물 7개동	86,400

#### 4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변경 승인안은 고지대 저소득층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위해 사하구 감천2동 6-115번지 일원의 방치된 빈집등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므로서 영세민 밀집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휴식 및 여가 활동공간의 기능을 부여할 뿐아니라 방치된 빈집등에 무단쓰레기 투기등으로 인한 생활 주변 환경 악화를 개선하고 저비용으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실익이 있으며
- 또한 본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시 주요 시정과제의 하나인 Well-being 시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전액 시비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2,800만원중 2005년도 예산에 4억8,749만8천원이 이미 내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예산확보를 위하여 변경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며
- 본 계획은 2004. 9. 13일 부산시로부터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지난 122차 임시회의시 의결된 2005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시 본 안건을 누락하고 123차 정례회시 변경승인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편성전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상 하자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.

2004. 12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두 천